

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563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56347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107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이창만

변론 종결 2023. 4. 13.

판결 선고 2023. 6. 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107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347,2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49,347,245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31,4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347,2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49,347,245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31,4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6/110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F에게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1. 9. 29. 접수 제176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성립 과정

1) E은 2017. 7. 26.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기간을 48개월, 약정이자율을 연 4.5%,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하여 대출받았다. H은 2019. 3. 19. E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H의 위임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E은 2017. 9. 20. H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기간을 39개월, 약정이자율을 연 15.5%, 연체이자율을 연 27%로 하여 대출받았다. H은 2019. 2. 19. E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H의 위임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19. E을 상대로 32,795,665원 및 그 중 26,683,153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25.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8.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64810, 이하 '제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4) 원고는 위 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29. E을 상대로 4,638,247원 및 그 중 4,026,752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9. 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10.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90916, 이하 '제2차 지급명령'이라 하고, 제1차 지급명령과 제2차 지급명령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변동 과정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소유였으나, G은 2007. 6. 1.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피고 B 및 각 직계비속인 E, 피고 C, F,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F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F은 2018. 10.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B, 피고 C, 피고 D(E의 자녀 중 1인이다)은 2018. 10.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가 41/100 지분, 피고 C이 1/100 지분, 피고 D이 58/10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차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3) 제1차 가등기는 2021. 9. 7.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21. 9. 28. 모두 말소되었다.
- 4) F은 2020. 10. 31. 사망하였고, 그 직계존속인 피고 B가 F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B는 2021. 9.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5) 피고 C, 피고 D은 2021. 9.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1. 9.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이 2/100 지분, 피고 D이 98/10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차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6) 이하 위 변동 과정에 나타나는 피고들 등의 가계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DIAGRAM: 피고들 등의 가계도(이미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 대한 2021. 4. 2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한 어떠한 증거 내지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오히려 피고들 역시 2023. 3. 16.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E이 2017년 초부터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E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8.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F을 포괄승계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C,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인 2017. 7. 26. 및 2017. 9. 20.에 각 E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 및 원고가 이를 양수받은 후 E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E에 대한 37,433,912원 및 그 중 26,683,153원에 대하여는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4,638,247원 및 그 중 4,026,752원에 대하여는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피보전채권의 계산식을 '49,317,245원 및 그 중 26,683,153원에 대하여는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위 돈 중 4,026,752원에 대하여는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재된 계산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0. 11. 25.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서 인용한 금원의 합계를 계산하여 보면 총 49,317,245원(= 제1차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의 합계 43,434,567원(= 원금 26,683,153원 + 26,683,153원에 대하여 2019. 6.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112,512원 + 26,683,153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11. 24.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638,902원) + 제2차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의 합계 5,882,678원(= 원금 4,026,752원 + 4,026,752원에 대하여 2019. 8.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11,495원 + 4,026,752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11. 24.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44,431원))으로서 서로 동일한 금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재된 계산식을 따른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E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수익자 F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각 악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또는 제2차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2021. 9. 23.자 매매예약 당시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각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는 '통장입금내역(을 제1호증)'이 유일한데, 위 '통장입금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E이 아닌 피고 C 명의의 계좌인데다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E이 아닌 피고 C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중 E에 대한 지급내역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으로서 거래기록사항에 'E흑관자재비', 'E생활비', 'E철판값', 'E적재함금액', 'E포크레인' 등이 기재된 부분의 금원의 합계는 3,365,000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들과 E의 관계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수익자 F 및 전득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회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제1차 가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가, 위 제1차 가등기가 말소된 후 피고 B 명의의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다시 피고 C 및 피고 D 명의의 제2차 가등기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는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 각 부동산 중 각 E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는 진정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하게 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2차 가등기는 위 E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9/11 지분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이러한 가등기의 효력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회복될 E의 지분 위에도 존속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한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및 전득자가 모두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그들의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당심 변론종결일이 2023. 4. 13.임은 기록상 명백한바, 2023. 4. 13.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원고의 제1차 지급명령에 따른 피보전채권액은 60,606,820원(= 원금 26,683,153원 + 26,683,153원에 대하여 2019. 6.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112,512원 + 26,683,153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3. 4. 13.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811,155원)이고, 원고의 제2차 지급명령에 따른 피보전채권액은 8,186,201원(= 원금 4,026,752원 + 4,026,752원에 대하여 2019. 8.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11,495원 + 4,026,752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3. 4. 1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47,954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각 금원을 더한 68,793,021원(= 8,186,201원 + 60,606,82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산정

2021. 1. 1.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합계가 421,152,400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170,961,3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275,300원 × 621m²) +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186,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26,563,3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243,700원 × 109m²) +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 37,627,8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316,200원 × 119m²)]인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시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421,152,400원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당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E의 법정상속분 2/11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의 합계는 76,573,163원(= 421,152,400원 × 2/11지분)이다.

이를 다시 각 피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피고 B가 취득한 공동담보가액은 76,573,163원(= 421,152,400원 × 2/11지분), 피고 C이 취득한 공동담보가액은 위 금액을 피고 C이 제2차 가등기에 따라 전득하게 된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1,531,463원(= 421,152,400원 × 2/11지분 × 2/100지분), 피고 D이 취득한 공동담보가액은 위 금액을 피고 D이 제2차 가등기에 따라 전득하게 된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75,041,699원(= 421,152,400원 × 2/11지분 × 98/100지분)이다.

다) 이 부분의 결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8,793,021원과 각 피고별로 계산한 각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원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한도 및 가액배상액이 되는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가액배상액은, 피고 B는 위 금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347,245원, 피고 C은 1,531,463원, 피고 D은 위 금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347,245원이 되고, 전득자인 피고 C과 피고 D은 수익자인 피고 B와 각 공동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347,2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49,347,245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31,4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섭

판사백장미

판사김수현

별지